

울산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3가단1316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울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아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기묵

변론 종결2024. 10. 15.

판결 선고2024.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2022. 7.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이하 '고성등기소'라고만 한다) 2022. 7. 20. 접수 제11127호로, 이 사건 제4, 5, 6 부동산에 관하여 고성등기소 2022. 7. 20. 접수 제11128호로 각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D의 E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건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그 약정 상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 각 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2017. 4. 14.	8,075만 원(이후 7,650만 원으로 변경)	2018. 4. 13.까지(이후 2023. 4. 7.까지로 연장)
2022. 3. 31.	1억 4,535만 원(이후 8,721만 원으로 변경)	2023. 3. 31.까지

나. D은 2022. 10. 31. E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연체, 사업장 폐업 등의 보험사고를 일으켰고, E은행은 2022. 12. 15. 원고에게 D이 그와 같은 보험사고를 일으켰음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23. 3. 10. D을 대위하여 E은행에 77,757,031원 및 88,596,693원을 각 변제하였다.

원고는 2023. 12. 5.을 기준으로 D에 대하여 원리금 합계 181,835,207원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라. 1) B는 2022. 7.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매도하였다(이하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는 고성등기소 2022. 7. 20. 접수 제11127호로, 이 사건 제4, 5, 6 부동산에 관하여는 고성등기소 2022. 7. 20. 접수 제11128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1)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8.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고성등기소 접수 제14832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7. 11. 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고성등기소 2017. 11. 27. 접수 제26484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 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0. 7. 20. 해지를 원인으로 고성등기소 2022. 7. 20. 접수 제11052호로 각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B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상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 B는 D 직원들의 퇴직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에게는 사해의사도 없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성립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2023. 3. 10. 원고가 E은행에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B의 무자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B의 사해행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B의 유일한 재산이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 원고가 F감정평가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평가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244,544,400원인데,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2억 3,8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매매대금을 부당한 염가라고 볼 수는 없는 점, ○ B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2022. 7. 15.부터 2022. 7. 20.까지 E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합계 178,769,385원을 변제한 점, ○ 이와 같이 B가 E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2022. 7. 20.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 B는 위와 같이 변제하고 남은 매매대금으로 D에 근무하다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G, H, I, J, K, L 등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B가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음이 인정된다고 것이다. 따라서 B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상민

별지